

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
(관세청 고시 제2022-4호, '22. 1. 1.)

2. 개정 사유

-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(요청)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확인 지정(변경)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
-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

3. 주요 개정내용

-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
(제8조 개정, 별지 제2호서식 신설)
 -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
 -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 (매년 4월,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)
 -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 (첨부: 신규대조표·통관규제영향 분석서·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)
 -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

□ **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** (별표 2 개정)

○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

- 「약사법」 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

○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

-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

□ **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** (별표 1·별표 2 개정)

○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·협의사항 반영 등

- (수출) 5개 법령 349개 품목 변경, 18개 품목 제외

- (수입) 15개 법령 25개 품목 추가, 434개 품목 변경, 65개 품목 제외

※ 상세 변경사항은 [참고] 참조

□ **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** (별표 3 개정)

○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 물품 추가

□ **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** (제2조·제7조·제9조·제10조 개정)

○ 타법령 ⇒ 다른 법령 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
4. 전문 및 신규 조문 대비표 : “붙임” 참조

5. 규제대상여부 : “해당없음”

6. 시행일자 : 2023. . .

7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
- 담당자 : 김다사롬 사무관(042-481-7841)
 구영은 관세행정관(042-481-7795)
- 제출기한 : 2023.2.28.
- 제출방법 : 이메일(karen9022@korea.kr), 팩스(042-481-7829)

참고**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사항**

□ 세관장확인대상 변경사항(품목번호 기준, ()는 법령별 산정)

(단위 : 개)

구 분	법 령	개정 前	개정 後	변경사항
수 출	13	1,212 (1,427)	1,196 (1,409)	· 5개 법령 - (품목) 349개 변경, 18개 제외
수 입	40	4,818 (7,651)	4,790 (7,611)	· 15개 법령 - (품목) 25개 추가, 434개 변경, 65개 제외

□ 수출 물품(변경 349, 제외 18)

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-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제외 8)
- 통관여건과 해당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(변경 349, 제외 2)

2) 「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-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제외 3)

3) 「원자력안전법」

-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제외 3)

4)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-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제외 1)

5) 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

-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제외 1)

□ 수입 물품(추가 25, 변경 434, 제외 65)

1)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

-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제외 1)

2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

- 반송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변경 요청사항 반영(변경 5)

3)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

-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제외 2)

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-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(소방장비 포함 등) 요청 사항 반영(변경 27)

5)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-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(윤활제, 인쇄용 잉크·토너) 및 변경(윤활제, 인공 눈 스프레이 포함) 요청사항 반영(추가 7, 변경 4)

6)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

- 해당 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(지정검역물에 식용 등 양서류 포함) 및 해당 법에 따른 수입요건 자구수정(정비) 요청 사항 반영(변경 26)

7)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

-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제외 10)

8) 「식품방역법」

-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(벌·곤충 등) 요청사항 및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추가 8, 제외 3)

9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- 통관여건과 해당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*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(변경 292, 제외 2)

* 살아있는 동물과 알은 세관장확인 유지

10) 「약사법」

-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제외 9)

11) 「의료기기법」

-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(치과위생용 제품류, 치과용 조제품 등) 및 변경(치아재강화촉진제 등 제외, 초음파청진기 등 포함) 요청사항 반영,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추가 8, 변경 14, 제외 1)

12)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」

-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제외(자동차용 타이어) 및 변경(의류관리기, 리튬이차단전지 등 포함) 요청사항 반영, 품목번호 분류사항(이륜자전거(전기 자전거) 등) 반영,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변경 15, 제외 15)

13) 「전파법」

- 품목번호 분류 사항(이륜자전거(전기 자전거) 등) 및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변경 2, 제외 7)

14) 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

-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제외 1)

15) 「화학물질관리법」

-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(스트리시닌 등 금지물질) 및 변경(요건구비 제외 대상 설명, 황화수소 등 포함) 요청사항 반영, HSK 2022 개정사항 반영(추가 2, 변경 49, 제외 14)